

화협상담실



화협상담실은
보험과 안전점검, 방재기술지도 등
특수건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궁금증과 알고 싶은 사항을
풀어드립니다

보험상담

문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당 조합원들의 여론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점을 건의하오니 시정 및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행보험료는 가스판매가격이 kg당 740원일 때 산출한 것이므로 가스판매가격이 kg당 580원으로 인하된 현재를 기준하여 보험료를 인하 조정 요망.

2. 보험료는 분할 납입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외의 가산금은 법정이자 이하로 조정해 주고 무사고일 때는 매년 보험료 납입시마다 할인혜택을 줌으로써 보험가입의욕이 고취되도록 조치요망.

3. 가입자 가족 및 종업원에 대한 인명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요망.

4. 가스용기의 폭발이 아닌 접촉사고에도 보상 요망.

5. 보험가입자의 매출액 등 확인의 절차를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직접 확인요망.

6. 사고시 가해자에게 합의서 및 관계기관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현행 처리방법을, 관계기관에 신고되지 않았을지라도 한국화재보험협회 직원이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에 출장 확인하여 출장복명에 의해서 즉시 보상토록 조치요망.

7. 85년도 처음 실시에 의한 정산은 계몽과 인식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예상되므로 정산을 유보하여 주실 것을 요망.

답 : 가. 건의 1에 대하여: 가스판매조합인 귀조합원의 경우에는 가스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되므로 kg당 매출단가가 인하되면 총매출액이 변경되어 계약시 예납보험료도 그에 상응도록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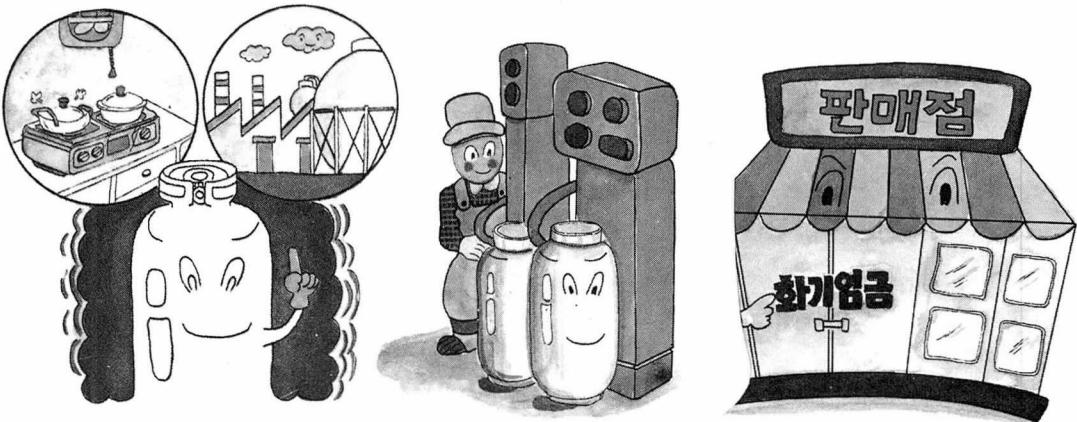
나. 건의 2에 대하여: 보험요율의 책정이 1년의 위험기간을 단위로 산출되며, 보험계약도 통상 1년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체결되므로, 장기성 보험이 아닌 일반 단기성(1년) 손해보험에서는 보험료의 분할 납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제혜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스보험에 정착되고, 일정기간 경과후 정확한 손해율이 나오게 되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건의 3에 대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에 대해서는 가족의 윤리, 도덕성을 감안하여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이므로, 이를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포함시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등과의 관련 중복 등을 고려하여 제외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종업원의 경우에는 임의로 별도의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 등



에 가입하셔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의4에 대하여: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가스사고란 가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의 누출에 따른 사고를 담보하는 의무 보험이며, 상기 원인을 제외한 접촉사고에 따른 제3자 배상책임은 임의적으로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셔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의5에 대하여: 당협회가 매출액의 확인절차를 밟기 위하여 일단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 만료시 가스보험약관 제10조의 “보험료 정산” 조항에 의거, 매출액의 통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매출액을 장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세무사에 의뢰하여 기장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당협회 직원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바. 건의6에 대하여: 가스보험약관 제16조의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조항에 따라 합의서의 제출은 필수적인 서류이며 다만, 관계기관의 사고확인서 제출은 손해의 규모가 작은 사고의 경우에 자체조사 또

는 귀조합이 입증하는 서류로 가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사. 건의7에 대하여: 가스보험약관 제10조의 “보험료 정산” 조항에 따라 계약시 납부한 예납보험료와 계약만료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확정 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리기로 되어 있는 것은 매출액의 크기에 따라 위험의 증감이 발생되므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적정한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귀조합의 건의 내용처럼 정산을 유보할 경우 예납보험료를 확정보험료 보다 많이 납부한 보험계약자에게는 손해가 되고, 예납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보험계약자는 이득을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전년도 계약한 예납보험료가 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서울남부가스판매업협동조합·답변: 본협회 보험3부〉

화합으로 맞은손님
웃으면서 돌아간다